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7
----------	------

제출일자 : 2023. 12. 6.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퇴직자(기계운영) 발생에 따른 직급(직렬)변경 및 교육정책과 교육재단설립TF팀 해체에 따라 발생한 정원 3명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 1,025명 → 1,025명(변동없음)
- 본청 정원 : 660명 → 658명(△2)
- 면 정원 : 56명 → 58명(+2)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11. 2. ~ 11. 22.)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25	658	21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0	650	21	84	177	5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38	615	18	81	169	55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2			2		
지도사	25			2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총 계	1,025	660	21	111	177	56	총 계	1,025	658	21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1	653	21	84	177	56	일반직 계	990	650	21	84	177	58
3급	1	1					3급	1	1				
4급	8	5	1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39	618	18	81	169	53	6급이하 계	938	615	18	81	169	55
연구직 계	3	3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3	3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5			25			지도사	25			25		
별정직 계	3	3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7급상당 이하 계	1	1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